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신고체육시설업에 요가·필라테스 추가 등 〉  
■ 강유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528호)

2024.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전완희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1. 신고체육시설업에 요가·필라테스 추가 .....            | 3  |
| 2. 체육시설업의 보증보험 가입의무 및 시정명령·과태료 조치 ..... | 10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강유정의원 등 19인
2. 발 의 일: 2024. 10. 4.
3. 회 부 일: 2024. 10. 7.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시설업을 골프장업, 스키장업 및 자동차 경주장업 같은 등록 체육시설업과 수영장업, 골프 연습장업 및 체육도장업 등과 같은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체력단련장 등을 운영하는 다수의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선불로 받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업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한편, 필라테스업과 요가업은 이용자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체육시설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법령상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요가업과 필라테스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3개월 이상의 이용료를 미리 지불받은 체육시설업자로 하여금 영업 중단 등

발생 시 이용자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 신설, 제30조제8호 및 제40조제1항제4호).

### Ⅲ. 검토의견

### 1. 신고체육시설업에 요가·필라테스 추가

##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요가업과 필라테스업을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

[ 개정안 조문 대비표 ]

| 현행                                                                                                                                                                     | 개정안                                                                                              |
|------------------------------------------------------------------------------------------------------------------------------------------------------------------------|--------------------------------------------------------------------------------------------------|
|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br>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br>-----.                                                                 |
| 1. (생략)                                                                                                                                                                | 1. (현행과 같음)                                                                                      |
|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br>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br>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br>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br>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br>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br>교습업, <u>인공암벽장업</u> | 2. -----<br>-----<br>-----<br>-----<br>-----<br>-----<br>-----<br><u>인공암벽장업, 요가업, 필라<br/>테스업</u>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상 체육시설업은 3종의 등록업과 24종의 신고업으로 구분되며 그 외의 체육시설은 자유업에 해당함.<sup>1)</sup>

[표] 체육시설업 현황

| 등록업                                              | 신고업                                                                                                                                             |
|--------------------------------------------------|-------------------------------------------------------------------------------------------------------------------------------------------------|
| (3종) 골프장업·<br>스키장업·<br>자동차경주장업<br>(법 제10조제1항제2호) | (17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br>(법 제10조제1항제2호) |
|                                                  | 체육도장업(7종) : 권투·레슬링·태권도·유도·검도·우슈·합기도<br>(법 제10조제1항제2호, 시행령 제6조 [별표2], 시행규칙 제6조)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체육시설업체는 일정한 시설 기준(법 제11조), 이용료 반환 등 준수사항(법 제22조), 체육지도자 배치(법 제23조), 안전·위생 기준(법 제24조), 자료제출(법 제24조의2), 보험가입(법 제26조) 등과 관련된 일정한 의무를 지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법 제30조), 등록 취소·영업폐쇄명령·영업정지(법 제32조), 벌금·과태료(법 제38조·제40조) 등의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sup>2)</sup>

그런데 요가업 및 필라테스업의 경우 체육시설업에 해당되지 않아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체육시설업자”란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2) [참고 1] 체육시설업 규제 관련 근거 조문

안전, 이용자 보호 등의 차원에서 통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바<sup>3)</sup>, 개정안은 요가업과 필라테스업을 체육시설업에 추가하여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요가 및 필라테스시설 이용자에 대한 보호가 두터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해 보임.

다만, 체육시설업의 활성화를 위해 1994년 법률 전부개정을 통해 체육시설업 종목을 대폭 축소한 이후 규제 완화 기초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전부개정 당시 요가도 신고체육시설업에서 자유업종으로 전환되었으며,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체육지도사’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를 반드시 배치해야하는데 현재 각각 약 천 개에 달하는 민간자격증<sup>4)</sup>이 형해화될 수 있고, 현 강사들의 요가 및 필라테스 체육지도사 자격 충족 과정에서 요가 및 필라테스업이 크게 위축될 우려도 있음.

이에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규제의 필요성, 해당 종목의 특성, 업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해 보임.

---

3) 현재 요가·필라테스시설 수에 대한 공식 통계자료 없음(문체부)

4) \*민간자격증 현황: 요가 1,086개, 필라테스 1,324개 ('24.10.2. 기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표] 체육시설업 연혁

| 법률                     | 등록업                                                                                                                                                                                  | 신고업                                                                                                                                                                                                                              | 계   |
|------------------------|--------------------------------------------------------------------------------------------------------------------------------------------------------------------------------------|----------------------------------------------------------------------------------------------------------------------------------------------------------------------------------------------------------------------------------|-----|
| 제4106호<br>1989.3.31.   | 9종                                                                                                                                                                                   | 40종                                                                                                                                                                                                                              | 49종 |
|                        | 골프장업,<br>스키장업,<br>요트장업,<br>조정장업,<br>카누장업,<br>빙상장업,<br>경륜장업,<br>승마장업,<br>종합체육시설업                                                                                                      | 수영장업,<br>체육도장업(권투·레슬링·유도·검도·태권도·<br>합기도·육체미·우슈·요가·궁중무술·국술·태수도<br>·국선도·원격도·킥복싱·활기도·수박도·격투기<br>·화랑도·불무도·한무도·공권도·활법·왕도특수<br>무술·특공무술·유술·통일무술·도봉술·회전무술·<br>십팔기·십팔반무예), 볼링장업, 정구장업,<br>골프연습장업, 탁구장업, 롤러스케이트장업,<br>체력단련장업, 미용제조장업, 당구장업 |     |
| 제4719호<br>1994.1.7.    | 9종                                                                                                                                                                                   | 16종                                                                                                                                                                                                                              | 25종 |
|                        | *경륜장업,<br>합기도·육체미·요가·궁중무술·국술·태수도·국선도·원격도·킥복싱·<br>활기도·수박도·격투기·화랑도·불무도·한무도·공권도·활법·왕도<br>특수무술·특공무술·유술·통일무술·도봉술·회전무술·십팔기·십팔<br>반무예, 정구장업, 미용제조장업 제외<br>**자동차경주장업, 테니스장업, 썰매장업, 에어로빅장업 추가 |                                                                                                                                                                                                                                  |     |
| 제5636호<br>1999. 1.18.  | 9종                                                                                                                                                                                   | 14종                                                                                                                                                                                                                              | 23종 |
|                        | *탁구장업, 롤러스케이트장업 제외                                                                                                                                                                   |                                                                                                                                                                                                                                  |     |
| 제7629호<br>2005. 7.29.  | 3종                                                                                                                                                                                   | 22종                                                                                                                                                                                                                              | 25종 |
|                        |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추가                                                                                                                                                                      |                                                                                                                                                                                                                                  |     |
| 제7913호<br>2006. 3.24.  | 3종                                                                                                                                                                                   | 19종                                                                                                                                                                                                                              | 22종 |
|                        | *볼링장업, 테니스장업, 에어로빅장업 제외                                                                                                                                                              |                                                                                                                                                                                                                                  |     |
| 제15767호<br>2018. 9.18. | 3종                                                                                                                                                                                   | 22종                                                                                                                                                                                                                              | 25종 |
|                        | *야구장업, 가상체험체육시설업, 합기도 추가                                                                                                                                                             |                                                                                                                                                                                                                                  |     |
| 제17257호<br>2020. 5.19. | 3종                                                                                                                                                                                   | 23종                                                                                                                                                                                                                              | 26종 |
|                        | *체육교습업 추가                                                                                                                                                                            |                                                                                                                                                                                                                                  |     |
| 제17591호<br>2020. 12.8. | 3종                                                                                                                                                                                   | 24종                                                                                                                                                                                                                              | 27종 |
|                        | 골프장업·스키장업<br>·자동차경주장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br>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br>체육도장업(권투·레슬링·태권도·유도·검도·우슈·<br>합기도),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br>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br>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     |
|                        |                                                                                                                                                                                      | *인공암벽장업 추가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참고 1] 체육시설업 규제 관련 근거 조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시설 기준 등)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소음·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
  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 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 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5.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 외에 회원의 운영 및 일반이용자의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②무도학원업자·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①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위생 기준 등) ①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임무, 수질 관리, 보호장구의 구비(具備) 및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24조의2(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및 제22조에 따른 준수 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이 사무소나 체육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26조(보험 가입)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시정명령)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한 때
2.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설을 설치한 때
3.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4. 제18조에 따른 회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5. 제21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를 위반한 때
6. 제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때
7.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한 때
8.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제32조(등록취소 등) ①시·도지사는 등록 체육시설업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2016. 2. 3., 2020. 12. 8., 2022. 1. 18., 2022. 5. 3.>

1. 제4조의5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한 경우
4. 제19조제1항 후단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4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6.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제38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1.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설치한 자
2.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은 제외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2. 29., 2016. 2. 3., 2018. 10. 16., 2023. 8. 8.>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은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은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역과 벌금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제4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2. 29., 2015. 2. 3., 2016. 2. 3., 2020. 12. 8., 2024. 10. 22.>

1. 제4조의5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2.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자
4.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3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같은 항 각 호의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7.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 2. 체육시설업의 보증보험 가입의무 및 시정명령·과태료 조치

###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체육시설업자에게 체육시설업의 폐·휴업 등으로 이용료 반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26조제2항 신설, 제30조제8호 및 제40조제1항제4호).

#### [ 개정안 조문 대비표 ]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6조(보험 가입) (생 략)<br><br><신 설>                                                                       | 제26조(보험 가입)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br>② 회원 또는 일반이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선불이용료(회원 또는 일반이용자가 3개월 이상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을 받는 대가로서 미리 지불한 이용료를 말한다)를 받은 체육시설업자는 제22조 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회원 또는 일반이용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 제30조(시정명령)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30조(시정명령) -----<br>-----<br>-----<br>-----<br>-----.                                                                                                                                                                                    |

|                                                                 |                                                           |
|-----------------------------------------------------------------|-----------------------------------------------------------|
| 1. ~ 7. (생략)                                                    | 1. ~ 7. (현행과 같음)                                          |
| 8.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br>아니한 때                                   | 8. 제26조제1항에-----보험 또는 같은<br>조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에-----<br>----- |
|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br>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br>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0조(과태료) ① -----<br>-----<br>-----.                      |
| 1. ~ 3.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br>아니한 자                                   | 4. 제26조제1항에-----보험 또는 같은<br>조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에-----<br>----- |
| 5.·6. (생략)                                                      | 5.·6. (현행과 같음)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상 체육도장업 등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를 제외한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관련 또는 시설 내 피해 보상을 위하여 손해 보험에 가입하고 시·도지사 등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sup>5)</sup>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 가입)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보험 가입) ① 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 가입은 단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체육시설업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3., 2019. 6. 25.>

1. 등록 체육시설업자 : 시·도지사

2. 신고 체육시설업자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③ 법 제26조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란 체육도장업,

이에 2023년 기준 손해보험 가입의무 대상 체육시설은 2,963개이며, 2024년 기준 지자체에서 자체 관리 중으로 현황 파악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719개소 중에서는 714개소가 가입하였음.

[표] 손해보험 가입의무 대상 체육시설

| 연도                     | 2021  | 2022  | 2023  |
|------------------------|-------|-------|-------|
| 가입의무 대상 체육시설 수(단위: 개소) | 2,709 | 2,777 | 2,963 |

\*가입의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법 제30조제8호), 등록취소등(법 제32조제2항제6호), 과태료(법 제40조제1항제4호) 등 조치 관련 현황 자료 없음  
 \*\*지자체에서 체육시설 등록·신고 시 보험가입 현황을 입력하고 있으나, 현행화가 필요하여 행안부 ‘재난 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해당 현황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  
 \*\*\*체육시설 가입의무 준수여부를 안전점검(반기별 1회) 시 확인하고 있으며(법 제4조의3,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등), 2024년 기준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 점검 대상 체육시설(국가 설치·운영 공공체육 시설 및 문체부장관이 고시한 안전관리 취약 시설)의 경우 719개소 중 714개소가 가입 완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런데, 체육시설 휴·폐업 등으로 인한 이용료 반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이용자 손해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개정안은 체육시설업자에게 이용료 반환 관련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리고 개정안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현행법에 따라서도 등록취소·영업폐쇄명령·영업정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고(법 제32조 제2항), 동 영업폐쇄명령·정지명령을 받고 영업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도 될 수 있음(법 제38조제2항제3호).

---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및 체육교습업을 설치·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체육시설에 수 개월 단위의 선불이용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자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해 보임.

다만, 이용료 반환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신고 체육시설업자에게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sup>6)</sup>이 2024. 9. 26.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5. 4. 23. 시행 예정이라는 점,

소규모 체육시설일수록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료가 시설 이용료에 반영되어 결과적으로는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고<sup>7)</sup>, 시설마다 특정 시점별로 선불이용료를 지불한 이용자 수가 달라지므로 시설업자가 항상 정확한 보험규모로 가입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6) 김영배의원안(2201550), 2024.7.10. 제안

7) 보증보험료의 경우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 상대적으로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어 중·대형 업체와 비교 시 경쟁력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 우려 (문체부)

□ 체육시설 이용료 관련 이행보증보험 현황

○ 현재 체육시설 이행보증보험 상품은 골프장, 승마장 등 2종(서울보증보험) 존재

| 업종            | 연간 보험료 = 연회비(회원권 가격)×회원수×보험요율                                                                                  | 상품명(운영사)           |
|---------------|----------------------------------------------------------------------------------------------------------------|--------------------|
| 골프장           | (예) 848백만원(1억원×500명×1.695%)                                                                                    | 지급보증보험<br>(서울보증보험) |
| 승마장           | (예) 42백만원(500만원×500명×1.695%)                                                                                   |                    |
| (가정)<br>체력단련장 | (가정) 10백만원(100만원×500명×2%*)<br>*등록업 지급보증보험 기본요율 연 1.695%,<br>인허가보증보험(영업보증금) 기본요율 연 0.227% 등<br>최대 2% 산정(서울보증보험) | 별도 상품 없음           |

\*골프장의 경우 가입실적 없음

부가적으로, 최근 한국체력단련장경영자협회와 (주)Pay+가 공동 개발한 안심결제서비스 ‘킵페이(keepay)’가 활성화되면 해당 서비스가맹시설의 이용자는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잔여 이용료를 보상 받을 수 있어 이용자 보호가 두터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행예정법률 및 안심결제서비스의 이용자 보호 효과, 보증보험 가입료의 예상 가격전가율 및 가입 대상 범위, 가입 여부에 대한 실효적인 점검 방식 등에 대한 충분한 확인 후 개정안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sup>8)</sup>

---

8) 덧붙여, 문체부는 소비자기본법, 할부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통해서도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의견임

-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의 권리남용행위를 불공정 거래의 유형으로 부당한 행위 지정·고시(제12조), 부당행위 지정·고시 위반 금지(제20조) 규정
  - (소비자 보호) 사업자의 부당행위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제55조), 단체소송(제70조)을 통한 피해구제 가능
  - (부당행위 사업자 제재) 한국소비자원 조사 의뢰(제81조), 사업자 부당행위 시 시정조치 명령(제80조) 및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제84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제86조)
- 할부거래법은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 시 소비자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항변권(제16조) 규정

[참고 2] 소비자기본법, 할부거래법 등 소비자 보호 관련 조문

참고로,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개정안의 ‘선불이용료’의 정의가 포괄적이어서, 시설 이용 시 납부하는 ‘입장료’와 별도로, 양도·양수·승계 등이 가능한 재산권인 골프장회원권의 ‘입회금’까지 ‘선불이용료’에 포함될 우려가 있는 등 회원제골프장업은 제외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표] 안심결재서비스 킵페이(keepay)

|       |                                                                                                                                                                                                                                                                                                                                                                                                                                                                                                                                                                                                                                                                                                                                                                                                                                                                                                                                                                                                   |
|-------|---------------------------------------------------------------------------------------------------------------------------------------------------------------------------------------------------------------------------------------------------------------------------------------------------------------------------------------------------------------------------------------------------------------------------------------------------------------------------------------------------------------------------------------------------------------------------------------------------------------------------------------------------------------------------------------------------------------------------------------------------------------------------------------------------------------------------------------------------------------------------------------------------------------------------------------------------------------------------------------------------|
| 내용    | <p>○킵페이(Keepay) 앱 가입 시, 체육시설 휴폐업에 따른 먹튀 발생 시 가입 개별 건에 대해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 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 위험 고지) 직원 급여 지급, 체제공과금 미납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위험 징후 발생 시 이용자에게 업체 경영정보 제공</li> <li>- (피해구제) 체육시설 먹튀 발생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체육시설 휴·폐업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상 신청→ ② 운영사 사실 확인 후 타 시설 이용 연계 또는 잔여 이용금액 보상</li> </ul> </li> </ul>                                                                                                                                                                                                                                                                                                                                                                                                                                                                                                                                                                                                           |
| 운영사   | (주)Pay+                                                                                                                                                                                                                                                                                                                                                                                                                                                                                                                                                                                                                                                                                                                                                                                                                                                                                                                                                                                           |
| 가입자   | '24. 10월 기준, 122개소 체육시설 가입                                                                                                                                                                                                                                                                                                                                                                                                                                                                                                                                                                                                                                                                                                                                                                                                                                                                                                                                                                        |
| 운영 체계 | <p>The diagram illustrates the Keepay service system flow. It shows the relationship between Customers (고객/회원), Gyms (체육시설), Operators (운영사 (주)Pay+), Keepay Service (Keepay 서비스 (App, 고객센터)), KPFMA (한국체육산업개발공사), and Insurance Companies (보험사). The process includes membership, payment, and compensation steps.</p> <pre> graph LR     subgraph "가입 프로세스"         direction LR         C1[고객1<br/>고객2 ...] -- "④ 킵페이 가입" --&gt; GS[고객(회원)]         GS -- "⑤ 이용권 결제" --&gt; CS[체육시설]         CS -- "② 사용 안내" --&gt; KPFMA[KPFMA<br/>한국체육산업개발공사]         KPFMA -- "① 업무 협약" --&gt; OP[운영사 (주)Pay+]         OP -- "③ 킵페이 사용 등록" --&gt; CS         OP &lt;--&gt; KS[Keepay 서비스<br/>(App, 고객센터)]         KS &lt;--&gt; B[보험사]     end      subgraph "먹튀 보상 프로세스"         direction LR         CS -- "① 먹튀 발생 후/폐업 안내(인지)" --&gt; GS         GS -- "② 킵페이 보상 신청" --&gt; KS         KS -- "③ 시설 휴/폐업 검증 및 보상" --&gt; GS     end      GS -.-&gt;  "④ 먹튀 시설 킵페이 가입 고객 위험(주의보) Push 알림"   C1     </pre>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참고로, 제21대 국회에 이용료 환급을 위한 보증보험 및 요가·필라테스업의 체육시설업화 관련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음.

[표] 제21대 국회 유사 법률안 발의 현황

| 대표발의자<br>(의안번호)         | 주요내용(조항)                                                                                                                                                                                                                                                                                                                                                                                                                                                                                                                                                                                                                                                                                       | 심사경과                                                                             |
|-------------------------|------------------------------------------------------------------------------------------------------------------------------------------------------------------------------------------------------------------------------------------------------------------------------------------------------------------------------------------------------------------------------------------------------------------------------------------------------------------------------------------------------------------------------------------------------------------------------------------------------------------------------------------------------------------------------------------------|----------------------------------------------------------------------------------|
| 강병원<br>의원안<br>(210368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료를 선불로 낸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안 제26조제2항)</li> <li>• 체육시설업자와 일반이용자간 약정한 때에는 약정한 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르되,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을 따름(안 제22조제1항제4호)</li> <li>• 보증보험 미가입 시 시정명령·과태료 조치 신설(안 제30조제8호, 안 제40조제1항제4호)</li> </ul> <p>○ 법안소위 심사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체육시설업, 보험업계 등 제반 사항 관련 실태 조사 및 개정안 내용 수정(①·②·③)을 위해 추가 논의 필요</u></li> <li>- ① 모든 체육시설업자 대상이 아닌 '선불이용료(3개월 이상의 이용료를 선불로 지불)'를 지불 받은 체육시설업자 대상으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필요성 검토</li> <li>- ② 행정상 3개월 이상의 선불이용료를 받는 체육시설업의 선별 가능성 검토</li> <li>- ③ 체육시설에 맞는 보험상품 개발(최소 6개월), 체육시설별 보증보험 가입금액 검토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2년 뒤 개정규정 시행 필요성 검토</li> </ul> | 발의(20.9.9.)<br>상정(20.11.13.)<br>법안소위<br>(21.2.24., 21.3.24.)<br>임기만료폐기(24.5.29.) |
| 홍익표<br>의원안<br>(211069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가업, 필라테스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하고 등록·신고 체육시설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li> </ul> <p>○ 법안소위 심사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체육시설을 자유업으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 현재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헬스장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가 논의 필요</u></li> </ul>                                                                                                                                                                                                                                                                                                                                                                                       | 발의(21.6.8.)<br>상정(20.9.13.)<br>법안소위(22.12.6.)<br>임기만료폐기(24.5.29.)                |

|                                  |                                                                                                                                                                                                                                                                                                                                                                                                         |                                                           |
|----------------------------------|---------------------------------------------------------------------------------------------------------------------------------------------------------------------------------------------------------------------------------------------------------------------------------------------------------------------------------------------------------------------------------------------------------|-----------------------------------------------------------|
| <p>류호정<br/>의원안<br/>(2124055)</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불이용료* 정의 신설(안 제2조의6)</li> <li>*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 또는 일반이용자가 체육 시설업자에게 계약에 따라 미리 지급한 3개월 이상의 이용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차 이용료</li> <li>● 약정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보다 일반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환(안 제22조제1항제4호)</li> <li>● 체육시설업 휴·폐업에 따른 이용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보증보험 가입(안 제26조제2항)</li> <li>● 보증보험 미가입 시 시정명령·과태료 조치 신설(안 제30조제8호, 안 제40조제1항제4호)</li> </ul> | <p>발의(23.8.29.)<br/>상정·소위화부(231130)<br/>임기만료폐기(24529)</p> |
| <p>이상현<br/>의원안<br/>(2124443)</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육시설업 휴·폐업에 따른 이용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보증보험 가입(안 제26조제2항)</li> <li>● 보증보험 미가입 시 시정명령·과태료 조치 신설(안 제30조제8호, 안 제40조제1항제4호)</li> </ul>                                                                                                                                                                                                                   | <p>발의(23.9.14.)<br/>상정·소위화부(231130)<br/>임기만료폐기(24529)</p> |

[참고 2] 소비자기본법, 할부거래법 등 소비자 보호 관련 조문

「소비자기본법」

제12조(거래의 적정화) ②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제20조(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④사업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정·고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고시 제7조)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 사전 통지 없이 사업자 자신의 채무 이행을 중지하는 행위

제55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①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2.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제80조(시정조치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그 행위의 중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81조(시정조치의 요청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물품등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0조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8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할부거래법」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3. 재화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화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문 의 처

02)6788-5375